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56호 2009. 11. 24(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2
- ◀ 규 칙 ▶
-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525호)..... 4
-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제526호) 7
-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제527호) 21
- ◀ 훈 령 ▶
-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제217호) 23
- 포항시 명예 읍·면·동장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제218호) 26
- ◀ 입법예고 ▶
-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09-1210호) 27
- ◀ 공 고 ▶
-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제2009-1195호)..... 30
-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41

회									
람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09. 11. 23(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1.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면 업무추진 노고치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들이 휴일도 없이 업무 및 관련 각종 행사를 추진하느라 노고가 많은 데 대해 감사를 드림 ○ 겨울철 화재예방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절기 화재예방 및 점검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집중적이고 확실한 점검이 되도록 철저히 기해주시 바람. ○ 시정홍보 적극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 관련단체들과 일년을 마무리하면서 시정성과를 설명하고 홍보해 주기 바람, - 간부회의에서 보고된 시정추진 사항을 직원들에게 전달하여 대시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기바람. ○ 선거법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월 4일부터는 180일전 선거법 준수사항 적용이 되므로 업무 추진시 자치행정과에 협의하는 등 선거법 준수에 철저히 기하기 바람. ○ 각종 사업장, 공사장 사업마무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을 앞두고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여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되 소모적인 예산 집행이 없도록 할 것이며, - 동절기 공사장 관리 철저 및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훈훈한 연말분위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연시 시내에 설치하는 크리스마스트리와 관련 주요거리 및 읍면동 청사주변에 경관조명을 설치토록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연시 분위기가 되도록 하기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재난안전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공보담당관)</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기획예산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자치행정과)</p>
'09-1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 관련 불법사례 근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사업에 대해 공무원이 문제점을 알고서도 명확히 처리하지 않아 처벌대상이 되고 있음. - 담당 공무원은 절대 관련 기업인과 외부에서 만나지 않도록 하고, - 감사부서는 비리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적발시는 일벌백계하여 비리공무원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p>
'09-1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민족해맞이 축제 준비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깜짝 놀랄 정도의 축제가 되도록 아이디어 개발 및 특별이벤트를 	<p style="text-align: center;">문화관광과</p>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09-082 (추가5)	<p>추진하기 바라며, -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12월초부터 중앙지 및 인근 대구, 부산지역에 홍보를 강화하기 바람. - 각 국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다음 간부 회의시 제출논의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p> <p>○ 쌀 소비확대 홍보강화 - 모든 행사에는 막걸리와 동동주를 활용토록 하고 전직원이 술선 실천하여 쌀 소비확대를 홍보하도록 하기 바라며, - 수도권 도시에 과메기를 홍보하며 쌀 막걸리를 곁들여서 홍보하는 등 쌀 소비 확대에도 애써주기 바람. - 쌀 막걸리의 전국적인 이슈화를 위해 방사광가속기 연구소와 협의, 동반 홍보가 되도록 추진하기 바람.</p>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09-160	<p>○ 불법광고물 정비 및 야간 불법 주정차 정리철저 - 최근 토, 일요일 단속공무원의 부재를 틈타 불법 현수막 계첩, 음란성 명함홍보물이 난립하고 야간에는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법질서 확립 차원의 적극 대처가 요구되고 있음 - 토, 일요일에도 필요시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하고 시장 등 공중장소의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할 수 있기 바람.</p>	남, 복구청 (자치행정과) (건설교통과)

규 칙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24일

포항시 규칙 제 525 호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경제산업국) 본문 중 “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를 “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제56조 관련)

기 관 별	직 위	직 급
구룡포읍사무소	구룡포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연일읍사무소	연일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오천읍사무소	오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흥해읍사무소	흥해읍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대송면사무소	대송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동해면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기면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보면사무소	대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신광면사무소	신광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청하면사무소	청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송라면사무소	송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기관별	직위	직급
기계면사무소	기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죽장면사무소	죽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기북면사무소	기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대동주민센터	상대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해도동주민센터	해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송도동주민센터	송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림동주민센터	청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제철동주민센터	제철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효곡동주민센터	효곡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이동주민센터	대이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동주민센터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양학동주민센터	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죽도동주민센터	죽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흥동주민센터	용흥동장	<u>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u>
우창동주민센터	우창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두호동주민센터	두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량동주민센터	장량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환여동주민센터	환여동장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0조(경제산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p> <p>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통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업노동과장·재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u>농축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u>, 해양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p>	<p>제20조(경제산업국) -----</p> <p>-----</p> <p>-----</p> <p>-----</p> <p>-----, <u>농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u>, -----</p> <p>-----</p>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제56조 관련)

기관별	직 위	직 급
구룡포읍 사무소	구룡포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연일읍 사무소	연일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오천읍 사무소	오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홍해읍 사무소	홍해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대송면 사무소	대송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동해면 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기면 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보면 사무소	대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신광면 사무소	신광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청하면 사무소	청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송라면 사무소	송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기계면 사무소	기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죽장면 사무소	죽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기북면 사무소	기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대동 주민센터	상대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해도동 주민센터	해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송도동 주민센터	송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림동 주민센터	청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별표 3】

읍·면·동장의 직급(제56조 관련)

기관별	직 위	직 급
구룡포읍 사무소	구룡포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연일읍 사무소	연일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오천읍 사무소	오천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홍해읍 사무소	홍해읍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대송면 사무소	대송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동해면 사무소	동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기면 사무소	장기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보면 사무소	대보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신광면 사무소	신광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청하면 사무소	청하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송라면 사무소	송라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사무관
기계면 사무소	기계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죽장면 사무소	죽장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지사무관
기북면 사무소	기북면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상대동 주민센터	상대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해도동 주민센터	해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송도동 주민센터	송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청림동 주민센터	청림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현 행			개 정 안		
기관별	직 위	직 급	기관별	직 위	직 급
제철동 주민센터	제철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제철동 주민센터	제철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효곡동 주민센터	효곡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효곡동 주민센터	효곡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이동 주민센터	대이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대이동 주민센터	대이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중앙동 주민센터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중앙동 주민센터	중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양학동 주민센터	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양학동 주민센터	양학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죽도동 주민센터	죽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죽도동 주민센터	죽도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흥동 주민센터	용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용흥동 주민센터	용흥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우창동 주민센터	우창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우창동 주민센터	우창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두호동 주민센터	두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두호동 주민센터	두호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량동 주민센터	장량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장량동 주민센터	장량동장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개정이유

○ 「포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선진일류도시 건설을 위한 주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일부부서의 직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축산과장 : 농업+수의사무관 ⇒ 행정+농업+수의사무관
- 구룡포읍장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사무관 ⇒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사무관
- 용 흥 동 장 : 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 행정+사회복지+공업+보건사무관

포항시 규칙 제 526 호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24일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직렬 및 직급명칭을 정하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직렬별 정원조정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조정 : 1,960명 → 1,960명(변동 없음)
 - 본 청 : 607명 → 607명(변동없음)
 - 5급 : 농업+수의 △1, 행정+농업+수의 +1
 - 읍 : 151명 → 151명(변동없음)
 - 5급 :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 동 : 211명 → 211명(변동없음)
 - 5급 : 행정+사복+보건+시설 △1, 행정+사복+공업+보건 +1

○ 기능직공무원 직급 및 직렬명칭 개정

- 기능7급 지방통신원 ⇒ 기능7급 지방통신장
- 기능6·7급 지방교환원 ⇒ 기능6·7급 지방전화상담장
- 기능8·9·10급 지방교환원 ⇒ 기능8·9·10급 지방전화상담원
- 기능6·7급 지방난방원 ⇒ 기능6·7급 지방열관리장
- 기능8·9·10급 지방난방원 ⇒ 기능8·9·10급 지방열관리원
- 기능6·7급 지방운전원 ⇒ 기능6·7급 지방운전장
- 기능6·7급 지방화공원 ⇒ 기능6·7급 지방화공장
- 기능6·7급 지방가스원 ⇒ 기능6·7급 지방가스장
- 기능6·7급 지방선장 ⇒ 기능6·7급 지방선박항해장
- 기능8급 지방선장 및 선원 ⇒ 기능8급 지방선박항해원
- 기능9·10급 지방선원 ⇒ 기능9·10급 지방선박항해원
- 기능6·7급 지방기관장 ⇒ 기능6·7급 지방선박기관장
- 기능8급 지방기관장 및 기관원 ⇒ 기능8급 지방선박기관원
- 기능9·10급 지방기관원 ⇒ 기능9·10급 지방선박기관원
- 기능6·7급 지방농림원 ⇒ 기능6·7급 지방농림장
- 기능6·7급 지방사육원 ⇒ 기능6·7급 지방사육장
- 기능6·7급 지방보건원 ⇒ 기능6·7급 지방보건장
- 기능6·7급 지방간호조무원 ⇒ 기능6·7급 지방간호조무장
- 기능6·7급 지방위생원 ⇒ 기능6·7급 지방위생장 또는 지방조리장
- 기능8·9·10급 지방위생원 ⇒ 기능8·9·10급 지방위생원 또는 지방조리실무원
- 기능6·7급 지방사무원 ⇒ 기능6·7급 지방사무실무장
- 기능8·9·10급 지방사무원 ⇒ 기능8·9·10급 지방사무실무원
- 기능6·7급 지방조무원 ⇒ 기능6·7급 지방조무장
- 기능6·7급 지방방호원 ⇒ 기능6·7급 지방방호장

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표(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총 계		1,960	607	37	170	291	324	151	169	211
정 무 직 계		1	1	-	-	-	-	-	-	-
지방정무직		1	1	-	-	-	-	-	-	-
별 정 직 계		26	1	-	24	1	-	-	-	-
6급상당 소 계		24	1	-	23	-	-	-	-	-
지방별정직 6급 (비서)		1	1	-	-	-	-	-	-	-
지방별정직 6급 (보건진료원)		23	-	-	23	-	-	-	-	-
7급상당 소 계		2	-	-	1	1	-	-	-	-
지방별정직 7급 (농기계교육교관)		1	-	-	1	-	-	-	-	-
지방별정직 7급 (여성교육강사)		1	-	-	-	1	-	-	-	-
연구 직 계		4	1	-	-	3	-	-	-	-
지방학예연구사		1	1	-	-	-	-	-	-	-
지방보건연구사		1	-	-	-	1	-	-	-	-
지방환경연구사		2	-	-	-	2	-	-	-	-
지 도 직 계		40	-	-	40	-	-	-	-	-
지 도 관 소 계		3	-	-	3	-	-	-	-	-
지방농촌지도관		2	-	-	2	-	-	-	-	-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지방생활지도관		1	-	-	1	-	-	-	-	-
지 도 사 소 계		37	-	-	37	-	-	-	-	-
지방농촌지도사		33	-	-	33	-	-	-	-	-
지방생활지도사		4	-	-	4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일반직 계		1,555	486	24	97	177	268	134	158	211
2 급 소 계		1	1	-	-	-	-	-	-	-
지방이사관		1	1	-	-	-	-	-	-	-
4 급 소 계		12	5	1	2	2	2	-	-	-
지방서기관		1	-	1	-	-	-	-	-	-
지방기술서기관		2	-	-	2	-	-	-	-	-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9	5	-	-	2	2	-	-	-
5 급 소 계		96	32	4	4	15	12	4	10	15
지방행정사무관		8	4	3	-	1	-	-	-	-
지방시설사무관		4	2	-	-	2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2	-	-	-	-	2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3	3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9	11	1	-	3	4	-	-	-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1	-	-	-	2	-	-	-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1	-	-	-	-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전산사무관 또는 지방통신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7	3	-	-	2	-	-	-	2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3	-	-	-	1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3	-	-	-	-	-	-	-	3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업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6	-	-	-	1	2	-	3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1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1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6	3	-	-	-	-	-	1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1	-	-	-	-	-	-	-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4	-	-	-	-	2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	-	-	-	-	-	-	2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	1	-	-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	-	2	-	-	-	-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	-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1	-	-	-	-	-	-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업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2	-	-	-	-	-	1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	-	-	-	-	-	-	1	-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업사무관	1	-	-	-	-	-	-	1	-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2	-	-	2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6 급 소 계		419	154	6	16	52	76	38	47	30
지방행정주사		135	66	4	-	19	24	-	-	22
지방세무주사		8	-	-	-	-	8	-	-	-
지방사회복지주사		4	2	-	-	-	-	2	-	-
지방전산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11	4	-	-	7	-	-	-	-
지방농업주사		4	2	-	-	-	2	-	-	-
지방복지주사		6	2	-	-	-	4	-	-	-
지방해양수산주사		2	2	-	-	-	-	-	-	-
지방보건주사		1	1	-	-	-	-	-	-	-
지방의료기술주사		1	-	-	1	-	-	-	-	-
지방시설주사		47	20	-	-	9	14	4	-	-
지방통신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21	3	-	-	1	4	4	9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29	6	-	-	1	2	2	10	8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2	2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		5	-	-	-	5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6	5	-	-	1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30	2	-	-	1	-	7	20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3	3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15	-	-	2	1	4	7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6	2	-	-	-	4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4	13	1	-	1	4	4	1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통신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2	2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3	-	-	-	3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4	3	-	-	1	-	-	-	-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4	-	-	-	-	4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복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4	3	-	-	1	-	-	-	-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수의주사		4	2	-	-	-	2	-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9	-	-	9	-	-	-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2	-	-	2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4	-	-	-	-	-	3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1	-	-	-	-	-	-	1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6	-	-	-	-	-	2	4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3	-	-	-	-	-	3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	-	-	1	-	-	-	-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2	-	-	2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1	-	1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7 급	소 계	459	163	8	32	60	92	32	37	35
	지방행정주사보	150	63	6	2	18	26	10	-	25
	지방세무주사보	29	3	-	-	1	10	5	8	2
	지방사회복지주사보	26	6	-	-	1	6	3	4	6
	지방전산주사보	1	1	-	-	-	-	-	-	-
	지방사서주사보	1	-	-	-	1	-	-	-	-
	지방공업주사보	26	13	-	-	13	-	-	-	-
	지방농업주사보	4	2	-	-	-	2	-	-	-
	지방복지주사보	7	3	-	-	-	4	-	-	-
	지방해양수산주사보	9	5	-	-	-	-	-	4	-
	지방보건주사보	10	1	1	6	-	2	-	-	-
	지방식품위생주사보	7	1	-	-	-	6	-	-	-
	지방의료기술주사보	6	-	-	6	-	-	-	-	-
	지방간호주사보	12	-	-	12	-	-	-	-	-
	지방환경주사보	9	8	-	-	1	-	-	-	-
	지방시설주사보	68	28	1	-	11	22	3	3	-
	지방통신주사보	3	1	-	-	-	2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전산주사보	6	5	-	-	1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사서주사보	2	-	-	-	2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공업주사보	3	-	-	-	3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농업주사보	33	1	-	-	3	2	9	18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보건주사보	5	1	-	-	-	2	2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1	1	-	-	-	-	-	-	-
지방행정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2	7	-	-	1	2	-	-	2
지방전산주사보 또는 지방공업주사보		1	1	-	-	-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환경주사보		9	5	-	-	2	2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2	2	-	-	-	-	-	-	-
지방공업주사보 또는 지방보건주사보		2	1	-	-	1	-	-	-	-
지방환경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	-	-	1	-	-	-	-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지방복지주사보		2	-	-	-	-	2	-	-	-
지방복지주사보 또는 지방시설주사보		1	1	-	-	-	-	-	-	-
지방농업주사보 또는 지방수의주사보		5	3	-	-	-	2	-	-	-
지방보건주사보 또는 지방간호주사보		6	-	-	6	-	-	-	-	-
8 급 소 계		367	99	5	38	36	54	37	30	68
지방행정서기		124	25	3	-	4	20	12	10	50
지방세무서기		27	2	-	-	1	6	4	2	12
지방사회복지서기		19	2	-	-	1	4	2	4	6
지방전산서기		4	3	-	-	1	-	-	-	-
지방사서서기		2	-	-	-	2	-	-	-	-
지방공업서기		22	8	-	-	12	2	-	-	-
지방농업서기		4	2	-	-	-	-	1	1	-
지방복지서기		6	4	-	-	-	2	-	-	-
지방해양수산서기		5	2	-	-	-	-	2	1	-
지방보건서기		21	-	-	17	-	4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지방의료기술서기		10	-	-	10	-	-	-	-	-
지방간호서기		2	-	-	1	1	-	-	-	-
지방환경서기		3	3	-	-	-	-	-	-	-
지방시설서기		58	30	-	-	8	12	5	3	-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세무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전산서기		7	5	2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공업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농업서기		15	2	-	-	-	2	9	2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복지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해양수산서기		1	-	-	-	-	-	-	1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보건서기		9	-	-	-	1	-	2	6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환경서기		1	1	-	-	-	-	-	-	-
지방행정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2	1	-	-	1	-	-	-	-
지방전산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1	-	-	-	1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시설서기		2	2	-	-	-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통신서기		1	1	-	-	-	-	-	-	-
지방공업서기 또는 지방환경서기		4	1	-	-	3	-	-	-	-
지방농업서기 또는 지방수의서기		3	1	-	-	-	2	-	-	-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의료기술서기		2	-	-	2	-	-	-	-	-
지방보건서기 또는 지방간호서기		8	-	-	8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9 급 소 계		201	32	-	5	12	32	23	34	63
지방행정서기보		64	16	-	-	5	-	8	10	25
지방세무서기보		32	-	-	-	-	12	6	8	6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4	3	-	-	-	2	5	4	30
지방전산서기보		2	2	-	-	-	-	-	-	-
지방공업서기보		1	-	-	-	1	-	-	-	-
지방농업서기보		7	-	-	-	-	-	2	5	-
지방복지서기보		4	1	-	-	1	2	-	-	-
지방보건서기보		9	-	-	5	-	4	-	-	-
지방환경서기보		2	-	-	-	-	2	-	-	-
지방시설서기보		19	5	-	-	3	6	-	5	-
지방통신서기보		3	3	-	-	-	-	-	-	-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사회복지서기보		4	-	-	-	-	-	2	-	2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전산서기보		3	2	-	-	1	-	-	-	-
지방행정서기보 또는 지방시설서기보		5	-	-	-	1	2	-	2	-
지방농업서기보 또는 지방수의서기보		2	-	-	-	-	2	-	-	-
기 능 직 계		334	118	13	9	110	56	17	11	-
기 능 6 급 소 계		13	6	-	-	7	-	-	-	-
6급 지방전기장		3	-	-	-	3	-	-	-	-
6급 지방기계장		3	-	-	-	3	-	-	-	-
6급 지방운전장		3	3	-	-	-	-	-	-	-
6급 지방선박항해장		1	1	-	-	-	-	-	-	-
6급 지방사무실무장		3	2	-	-	1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기능 7 급 소 계		34	17	-	-	12	4	1	-	-
7급 지방통신장		1	-	-	-	1	-	-	-	-
7급 지방전기장		3	-	-	-	3	-	-	-	-
7급 지방기계장		14	3	-	-	8	2	1	-	-
7급 지방운전장		4	4	-	-	-	-	-	-	-
7급 지방화공장		1	1	-	-	-	-	-	-	-
7급 지방선박항해장		2	2	-	-	-	-	-	-	-
7급 지방사무실무장		9	7	-	-	-	2	-	-	-
기능 8 급 소 계		51	25	1	1	17	6	1	-	-
8급 지방건축원		3	1	-	-	-	2	-	-	-
8급 지방통신원		2	2	-	-	-	-	-	-	-
8급 지방전기원		4	-	-	-	4	-	-	-	-
8급 지방기계원		18	7	-	-	11	-	-	-	-
8급 지방열관리원		2	1	-	1	-	-	-	-	-
8급 지방운전원		10	4	-	-	1	4	1	-	-
8급 지방화공원		1	-	-	-	1	-	-	-	-
8급 지방선박기관원		1	1	-	-	-	-	-	-	-
8급 지방농림원		1	1	-	-	-	-	-	-	-
8급 지방사무실무원		8	7	1	-	-	-	-	-	-
8급 지방조무원		1	1	-	-	-	-	-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기능 9 급 소 계		110	38	7	5	35	20	2	3	-
	9급 지방통신원	2	1	1	-	-	-	-	-	-
	9급 지방전화상담원	3	1	-	-	-	2	-	-	-
	9급 지방전기원	6	1	-	-	5	-	-	-	-
	9급 지방기계원	24	6	-	-	18	-	-	-	-
	9급 지방열관리원	2	-	-	-	2	-	-	-	-
	9급 지방선박항해원	1	1	-	-	-	-	-	-	-
	9급 지방운전원	34	12	1	4	3	10	1	3	-
	9급 지방화공원	2	-	-	-	2	-	-	-	-
	9급 지방농림원	1	-	-	1	-	-	-	-	-
	9급 지방위생원	1	1	-	-	-	-	-	-	-
	9급 지방사무실무원	31	15	5	-	4	6	1	-	-
	9급 지방교환원 또는 9급 지방사무실무원	2	-	-	-	-	2	-	-	-
	9급 지방기계원 또는 9급 지방사무실무원	1	-	-	-	1	-	-	-	-
기능10급 소 계		126	32	5	3	39	26	13	8	-
	10급 지방전화상담원	1	1	-	-	-	-	-	-	-
	10급 지방전기원	3	1	-	-	2	-	-	-	-
	10급 지방기계원	2	-	-	-	2	-	-	-	-
	10급 지방운전원	35	7	1	1	7	2	9	8	-
	10급 지방위생원	1	-	-	-	1	-	-	-	-
	10급 지방사무실무원	54	19	4	-	12	16	3	-	-
	10급 지방조무원	9	2	-	-	4	2	1	-	-

직렬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 속 기 관	사업소	구 청	읍	면	동
	10급 지방전기원 또는 10급 지방위생원	2	-	-	-	2	-	-	-	-
	10급 지방전기원 또는 10급 지방조무원	5	-	-	-	5	-	-	-	-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열관리원	3	1	-	2	-	-	-	-	-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위생원	2	-	-	-	2	-	-	-	-
	10급 지방기계원 또는 10급 지방조무원	7	1	-	-	2	4	-	-	-
	10급 지방사무실무원 또는 10급 지방방호원	2	-	-	-	-	2	-	-	-

포항시 규칙 제 527 호

포항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24일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을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 민원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으로 한다.

제1조 본문 중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민원조정위원회” 를 “문제점, 현행 제도 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항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위원회” 로 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복합민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제1항 중 “1인” 을 “1명” 으로, “20인” 을 “20명” 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에서는 각 본부·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에서는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 을 “새마을봉사과장” 으로 한다.

제12조 중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명 포함시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함시와 구에서 처리하는 복합 민원 인·허가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u>포함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u>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생략) 1~3.(생략) 4. <u>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u> 5~7.(생략)</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 ②(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시에서는 <u>본부장·국장, 감사 담당관, 소장, 구에 서는 과장</u> 2. 민원과 관련이 있는 <u>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 부서장</u></p> <p>제6조(간사) ①(생략) ② 간사는 시에서는 <u>자치행정과장, 민원주관 담당 관·과장이 되고, 구에서는 민원행정업무담당 주사·주관부서업무담당 주사가 된다.</u> ③(생략)</p> <p>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생략)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u>자치행정 과장이 민원서류를 접수후 8근무시간이내에 위원 회에 상정한다.</u></p> <p>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 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포항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u>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u>제명 포함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u></p> <p>제1조(목적) 문제점, 현행 제도 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u>고충민원 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함시 민원조정 및 고충민원처 리위원회</u></p> <p>제2조(기능) (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 <u>복합민원, 고충민원</u> 5~7.(현행과 같음)</p> <p>제3조(구성) ① 1명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②(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u>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에서는 각 본부 국·소장, 감사담당관으로 구에 서는 각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 구 청장이 위촉한다.</u> 1. 삭제 2. 삭제</p> <p>제6조(간사) ①(현행과 같음) ② <u>새마을봉사과장</u>..... ③(현행과 같음)</p> <p>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현행과 같음) ② <u>새마을봉사 과장</u>.....</p> <p>제12조(외부위원 수당) <u>“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p>

1. 개정이유

시민권익이 침해되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 처리가 어려운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에 고충처리 기능을 보강하고 현행 규칙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 시민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위원회 기능 보강(안 제2조)
 - ▶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고충민원 처리와 관련된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추가
- 내부 위원은 임명직에서 당연직으로 변경(안 제3조)
 - ▶ 시에서는 본부·국·소장, 감사담당관, 구에서는 각 과장
- 간사 및 안건의 상정자를 직제규칙에 맞게 조정(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 ▶ 시에서는 자치행정과장을 새마을봉사과장으로 변경
- 외부위원의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규정 조정(안 제12조)
 - ▶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

훈 령

포항시 훈령 제 217 호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24일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포항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지역 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의거 포함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 4. 영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 5.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 7. 「긴급복지지원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 8.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9.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결정
- 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제1항 중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를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위촉·지명 하되”를 “위촉하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간사 1인”을 “간사 1명”으로 한다.

제9조 본문 중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있다”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지역자활지원 계획)의 규정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3. 동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p> <p>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p> <p>5. 동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p>	<p>제3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시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지역자활 지원 계획)에 의한 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의하여 포함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p> <p>4. 영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p> <p>5.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연간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p>

현 행	개 정 안
<p>6. <u>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u></p> <p>7. <u>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u> (신 설) (신 설) (신 설)</p> <p>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u>위촉·지명하되</u>,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 3. (생략)</p> <p>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 ③ (생략)</p> <p>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u>간사 1인</u>을 두며, 간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생략)</p> <p>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u>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6. <u>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u></p> <p>7. 「<u>긴급복지지원법</u>,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p> <p>8. 「<u>긴급복지지원법</u>,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p> <p>9. 「<u>긴급복지지원법</u>,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 비용의 환수결정</p> <p>10.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4조(구성) ① ----- ---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② (현행과 같음) ③ -----<u>각 호의 어느하나에</u>----- ---<u>위촉하되</u>----- ----- 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u>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간사) ①----- -----<u>간사 1명</u>----- ----- 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수당 등) ----- ----- ----- 「<u>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u>,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1. 개정이유**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 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2. 주요내용**
-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심의·의결하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함(안 제3조)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통합운영가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2009. 5. 28개정)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개정요구사항

포항시 훈령 제 218 호

포항시 명예 읍·면·동장제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24일

포항시 명예 읍·면·동장제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읍·면·동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명예 읍·면·동장은 사회원로급 인사 중에서 덕망 있고 포항시 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명예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건강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명예 읍·면·동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사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제3조(직무) 명예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 1. 읍·면·동 행정 및 시정에 대한 자문
-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주민상담
- 3. 그 밖에 주민화합 및 읍·면·동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복무) 명예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해당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예우) ① 명예 읍·면·동장은 읍·면·동의 대내·외 활동시 읍·면·동장과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② 명예 읍·면·동장은 읍·면·동의 관내 활동을 위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③ 명예 읍·면·동장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주요현안 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읍·면·동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수당지급) 명예 읍·면·동장은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타)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포항시 명예 읍·면·동장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명예 읍·면·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안 제2조)

나. 명예 읍·면·동장은 읍면동 행정 및 시정에 대한 자문, 일선행정의 지도 및 주민상담, 그 밖에 주민화합 및 읍·면·동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 제3조)

다. 명예 읍·면·동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 1회 해당 읍·면·동에 출근하여 제3조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여 분기 1회 이상 시정의 자문에 응한다. (안 제4조)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 2009-1210 호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19일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 축제의 부실운영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지역축제 안전관리 개선대책 수립 시달 등 안전대책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안전계획을 검토·심의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포항시 주관 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포항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안 제7조)

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하며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 할 수 있음.(안 제7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 변경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재난안전과장, 주소 :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전화 : 054-270-3524, 팩스 : 054-270-3530, E-mail : teri70@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붙 임 :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 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의원 2인” 을 “의원 2명” 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간사 1인” 을 “간사 1명” 으로 하고, 같은 항 “재난관리담당 과장” 을 “재난안전과장” 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포항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 계획(공연법의 재해 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7조제4항에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를 신설 한다.

제10조제2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11조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4조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p> <p>1. (생략)</p> <p>2. 시의회 의원 2인</p> <p>3. (생략)</p> <p>② (생략)</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담당과장이 된다.</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p> <p>.....</p> <p>1. (현행과 같음)</p> <p>2. 시의회 의원 2명</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과장이 된다.</p>
<p>제4조(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임기) ①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p>	<p>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포함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p> <p>.....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p>
<p>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p> <p>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 등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p>	<p>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해당</p> <p>.....</p> <p>.....</p>
<p>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p>	<p>제11조(수당)</p> <p>..... 「포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p>
<p>제14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4조(운영규정)</p> <p>..... 해당</p>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공 고

포항시 공고 제2009-1195호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운영자 모집공고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본관,분관) 수탁운영법인(단체)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1월 17일

1.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

가. 위탁사무

- 1) 포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본관, 분관) 관리 및 운영 전반
- 2) 기타 근로자복지증진 사업

나. 위치 및 시설

- 1) 근로자종합복지회관(본관)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호동 628번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26,626.6㎡), 건축면적(4,065.27㎡)
 - 시설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주요시설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1층	534.76	전기실, 보일러실, 식당 등
지상1층	983.93	관리사무실, 매점, 탁구장, 휴게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
지상2층	921.4	대강당, 체력단련실 등
지상3층	593.6	소회의실, 독서실 등
지상4층	472.9	취미교실, 강의실 등
별관	493.44	기능실습장
부속시설물	65.24	가스 저장소, 화장실 및 탈의실
체육시설	16,530	인조잔디구장, 배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 2) 근로자종합복지회관(분관)

- 위 치 : 경북 포항시 남구 대도동 632-11번지
- 시설규모 : 대지면적(3,667.7㎡), 건축면적(1,385.865㎡)
- 시설구조 :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 주요시설

층 별	면 적(㎡)	용 도
지하1층	133.715	보일러실 등
지상1층	427.81	목욕탕, 숙직실, 구판장, 안내실 등
지상2층	380.61	상담실, 사무실 등
지상3층	395.23	회의실
지상4층	48.5	폐백실

2. 위탁기간 : 2년(2009. 12. 31 ~ 2011. 12. 30)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내 위탁관련법 변경 또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탁자가 필요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3.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포항시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

4. 위탁조건

- 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 준수
- 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준수
- 다. 위수탁협약 사항의 준수
- 라. 기타 위탁자가 정하는 사항의 준수

5. 신청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09. 11. 17 ~ 12. 7(21일간)
 ※ 신청서는 공무원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함
- 나. 접수장소 : 포항시 기업노동과 노사지원담당
- 다.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또는 인터넷 접수 불가)

6. 제출서류

- 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운영 신청서
- 나. 법인(단체)의 일반현황(법인정관, 법인조직, 임원명단, 주요사업,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등)
- 다. 법인(단체)의 재산현황(재산 및 부채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세목별과세증명, 예금잔액증명 등)
- 라. 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운영실적, 결산내역,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실적, 기부·후원금 등)
- 마.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서(사업의 비전, 중사자 확보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등)
- 바.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자체부담 확보계획
- 사.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 ※ 신청서류는 위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제본하여 10부 제출하여야 함

7. 수탁법인(단체) 선정방법 및 발표

- 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심사당일 법인 또는 단체에서 지정하는자가 사업설명 및 답변(10분 이내)
- 나. 심사결과 발표 : 접수자에게 개별통지

8. 기타사항

- 가. 수탁자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의해서만 심사되므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수정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더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기업노동과 노사지원담당(☎054-270-2444)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본관,분관)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 명칭			대표자	
법인(단체)소재지				
법인설립 (단체등록)일자			연락처	
재 산 현 황	동산	천원	년간 자부담능력	천원
	부동산	천원		
	부채액	천원		
법인(단체)주요사업				
수탁목적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4조 및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단체) 일반현황(법인정관, 법인조직, 임원명단, 주요사업,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위탁운영결의 이사회회의록 등)
2. 법인(단체) 재산현황(재산현황, 부채현황,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세목별과세증명, 예금잔액증명, 잔고증명 등)
3. 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운영실적, 결산내역, 근로자복지시설운영실적, 기부·후원금 등)
4.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서(시설운영의 비전, 중·장기 확보계획, 프로그램 운영계획, 소요예산과 예산조달 방법 등)
5.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자체부담 확보계획(자부담 계획이 있을시)
6.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서류 등

법인(단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법 인 명 (단체명)	소 재 지	설립근거 및 목적	허가관청	설립일자	사무실 전화번호

※ 첨부 :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법인 인감증명서

2. 법인(단체) 대표자 현황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	주요학력	주요경력	연락처

※ 첨부 : 이력서

3. 법인(단체)조직

- ① 조직표
- ② 법인(단체) 임원현황

연번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직업	주요경력

4. 법인(단체) 주요사업

- ① 설립목적
- ② 현재 운영중인 주요사업 내용(간략하게)

법인(단체) 재산현황

1. 재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A+B+C+D)	부동산(A)	동산(B)	부채(C)	기타(D)
법인(단체) 기본재산					

2. 재산별 세부현황

가. 부동산

○ 토지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과표액	비고(용도)

※ 비고란에는 현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과표가 기재된 토지대장 첨부

○ 건물

(단위 : 천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과표액	비고(용도)

※ 비고란에는 현 이용형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 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과세내역서) 첨부

나. 동산현황

(단위 : 천원)

동산형태	금 액	비 고

※ 첨부 : 예금잔액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다. 부채현황 :

라. 기타재산 :

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 운영실적(07~09)

1. 주요사업 추진실적

2. 법인(단체) 결산내역

가. '07년 법인(단체)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사업명	계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사업										

나. '08년 법인(단체)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사업명	계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사업										

다. '09년 법인(단체) 결산내역

(단위 : 천원)

세 입							세 출			
사업명	계	보조금	사업수입	법인전입금	후원금	기타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사업										

※ 최근 3년간 재무제표(관할 세무서 발행) 또는 결산보고서 첨부

3.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현황('07 ~ '09)

가. '07년 운영실적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운 영 실 적			비고
			계획	실적	비율	

나. '08년 운영실적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운영실적			비고
			계획	실적	비율	

다. '09년 운영실적

시설명	소재지	운영기간	운영실적			비고
			계획	실적	비율	

※ 관련 증빙서류 사본 첨부 / 서식 변경 가능

4. 법인(단체)기부·후원금과 유동자산의 연간수입액(최근 3년간)

가. 2007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실 적	비 고
계			
기 부 금			
후 원 금			
유동자산 수입액(이자)			

나. 2008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실 적	비 고
계			
기 부 금			
후 원 금			
유동자산 수입액(이자)			

다. 2009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실 적	비 고
계			
기 부 금			
후 원 금			
유동자산 수입액(이자)			

※ 관련 증빙서류 첨부/서식변경 가능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서

1.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계획서

- 가. 시설 운영의 비전
- 나. 향후 3년간 중점 추진사항
- 다. 시설 및 장비 관리계획 등

2. 세부 사업계획서

- 가.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나.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기존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 신규 프로그램의 도입 및 운영방안
 - 각종 예산의 절감 및 수익증대방안
 -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방안
 - 근로자 복지증진 방안 등

3. 운영에 따른 예산서('10 ~ '11, 연도별 구분 작성)

(20 년)

(단위 :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산출내역
		계	인건비	사업비	관리운영비	기타	
계							
운영비보조							
이용료수입							
자체부담금	법인 (단체) 전입금						
	후 원 금						
	기타수입						

4.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

- 조직운영에 필요한 소요인력 확보계획
- 종사인력 활용 및 역량강화 계획
 - 직원에 대한 업무평가, 보수교육계획
 - 직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 등

※ 서식변경 가능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자체부담 확보계획

1. 연간운영비 중 법인(단체)의 자체부담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자체부담내역			비 고
	계	법인(단체) 전입금	기타수입	
계				
2010				2010.1.1 ~ 12.31 (1년)
2011				2011.1.1 ~ 12.30 (1년)

2. 운영비 자체부담을 증빙할 수 있는 법인(단체)부담 확인내역 첨부

- 가. 이사회 회의록 결의내용 사본 등
- 나. 기타 자체부담을 위한 증빙자료 등

서 약 서

법인(단체)명 :
주 소 :
성 명(대표자) :

상기 본 법인(단체)은 금번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탁자 공모신청에 있어서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신청의
무효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위탁운영법인(단체)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 운영자로 선정될시 포항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09년 월 일

위 작성인 법인(단체)대표: (인감)

포항시장 귀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

2009년 11월에 실시한 정수장 및 수도꼭지 수질검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09. 11. 25.

포항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시행일	11월 중	검사기관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한국수자원공사
-----	-------	------	---------------------

정수

구분	검사항목	경수장,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감	공단	양덕	제2	택전	갈평	병포	약성	학야 (수자원공사)			
			안계염수		임하염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염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현 복류수		
			동지의 견체						연일읍	오전읍		구룡포읍	홍해읍	신원기개발부
									연일읍	오전읍		구룡포읍	홍해읍	
미생물	1. 일반세균(Total Colony Counts)	100CFU/ml이하	0	0	0	0	0	0	0	0	0			
	2. 총대장균군(Tot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E.coli/Fecal Coliforms)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일반수거지역양호수준인정	4. 납(Pb)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 불소(F)	1.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	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2			
	6. 비소(As)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 셀레늄(S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8. 수은(Hg)	0.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9. 시안(CN)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 6가크롬(Cr ⁶⁺)	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1. 암모니아성질소(NH ₃ -N)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2. 질산성질소(NO ₃ -N)	10mg/l이하	0.8	0.7	0.8	0.8	0.9	0.1	0.7	1.6	0.9			
	13. 카드뮴(Cd)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4. 보론(B)	1.0mg/l이하	0.043	0.020	0.029	0.050	0.050	불검출	0.036	0.048	0.028			
	일반수거지역양호수준이상인정	15. 페놀(Phenol)	0.0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6. 디아지논(Diazinon)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7. 파라티온(Parathion)		0.06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8. 페니트로티온(Fenitrothion)		0.04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9. 카바릴(Carbaryl)		0.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0. 1,1,1-트리클로로에탄 (1,1,1-Trichloroethane)		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1.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2. 트리클로로에틸렌(TC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3.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4. 벤젠(Benzene)		0.01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5. 톨루엔(Toluene)		0.7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6. 에틸벤젠(Ethyle Benzene)		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7. 크실렌(Xylene)		0.5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8. 1,1-디클로로에틸렌 (1,1-Dichloroethylene)		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29.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0.002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2-Dibromo-3-chloropropane)		0.003mg/l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수소		31. 유리잔류염소 (Free residual chlorine)	4.0mg/l이하	0.62	0.56	1.21	0.81	0.84	0.32	0.80	0.40	0.80		
	32. 총트리할로메탄(THMs)	0.1mg/l이하	0.0532	0.0457	0.0708	0.0490	0.0353	0.0359	0.0543	0.0246	0.0285			
	33. 클로로포름(Chloroform)	0.08mg/l이하	0.02927	0.03851	0.06216	0.02133	0.01023	0.02652	0.02979	0.01300	0.02464			
	34. 브로모디클로로메탄 (Bromodichloromethane)	0.03mg/l이하	0.01695	0.00721	0.00861	0.01822	0.01337	0.00940	0.01728	0.00633	0.00383			
	35. 디브로모클로로메탄 (Dibromochloromethane)	0.1mg/l이하	0.0070	불검출	불검출	0.0094	0.0117	불검출	0.0072	0.0053	불검출			

구 번	검 사 항 목	경수정,상수원 공급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학 아 (수자면공사) 신원기개발부
			안계댐수		임하댐수	형산강 복류수 안계댐수		진전지	눌대지수	곡강천 복류수	
			동지역 전체					연일읍	오천읍	구룡포읍	
36.경도(Hardness)	300mg/ℓ이하	112.5	78.5	81.3	121.1	118.7	43.6	81.8	128.4	78.6	
37.과망간산칼륨소비량 (Consumption of KMnO ₄)	10mg/ℓ이하	2.65	3.88	4.47	2.68	1.76	1.39	2.77	1.54	4.83	
38.냄새(Odor)	무취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39.맛(Taste)	무미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적합	
40.동(Cu)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1.색도(Color)	5도이하	1.0	1.0	1.0	1.0	1.0	1.0	1.0	1.0	1.0	
42.세제(음이온계면활성제, ABS)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3.수소이온농도(pH)	5.8-8.5	7.3	7.2	7.2	7.3	7.3	6.9	7.1	6.7	6.9	
44.아연(Zn)	3mg/ℓ이하	0.006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20	0.0026	0.0036	0.3293	불검출	
45.염소이온(Cl ⁻)	250mg/ℓ이하	32	11	13	40	37	13	32	18	8	
46.총발견류물(Total solids)	500mg/ℓ이하	189.0	82.0	97.0	208.0	195.0	61.0	123.0	186.0	137.0	
47.철(Fe)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8.망간(Mn)	0.3mg/ℓ이하	불검출	0.0399	0.0130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9.탁도(Turbidity)	0.5mg/ℓ이하	0.119	0.212	0.182	0.140	0.133	0.184	0.212	0.134	0.053	
50.황산이온(SO ₄ ²⁻)	200mg/ℓ이하	46	15	17	55	57	11	41	73	30	
51.알루미늄(Al)	0.2mg/ℓ이하	0.030	0.029	0.041	0.026	0.027	불검출	0.022	불검출	0.022	
판		경 경수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노후지역 수도꼭지

검 사 항 목	경수정 급수지역 기준	유 강	공 단	양 덕	제 2	택 전	갈 평	병 포	약 성	
		용출동	송동리	한호동	해동동	택전리	문덕1리	구룡포리	마산리	
1.일반세균	100CFU/ml	0	0	0	0	0	0	0	0	
2.총대장균군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대장균/분원성대장균	불검출/100ml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4.암모니아성질소	0.5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유리잔류염소	4.0mg/ℓ이하	0.60	0.50	1.19	0.75	0.75	0.18	0.78	0.35	
6.동	1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7.아연	3mg/ℓ이하	0.009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0.0034	0.0082	0.0036	0.3335	
8.염소이온	250mg/ℓ이하	32	11	14	40	37	13	32	18	
9.철	0.3mg/ℓ이하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망간	0.3mg/ℓ이하	불검출	0.0116	0.0127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판		경 수도꼭지 수도물의 상기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한 수질입니다.								

- ▶ 수도물에 대한 문의사항은 포항시상수도사업소 국번없이 121 또는 270-5454, 학야정수장 230-4791
-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홈페이지(<http://water.ipohang.org/>)

◆ 시민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안전한 수도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